

2022. 10. 27. 보도자료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제 목 : 10월 선고 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

우리 재판소에서 2022. 10. 27.(목) 선고한 심판사건 결정요지 등 (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2. 10. 27.(목) 14:00 ~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붙임: 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 4건. 끝.

보 도 자 료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공공단체(총장)의 행정소송 제소권한 부인 사건

[2019헌바1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2021헌마686·155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등 당사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이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및 공공단체를 명시적으로 행정소송 제기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 및 공공단체인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이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또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또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이 있다.



2022. 10. 27.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2019헌마117 사건

- 청구의 박○○는 한국과학기술원 □□대학 △△학부 교원으로, 2016. 3. 25. 한국과학기술원에 영년직 교수 임용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28. 한국과학기술원 교원인사위원회로부터 그 임용 기준에 미달하여 불추천한다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6. 7.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청구인(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은 2017. 9. 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 제1심 법원은 2019. 2. 14.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은 위 조항에서 규정한 ‘등 당사자’에 포함되어 제소권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불추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하 ‘교원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219),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위 법원 2017아10005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9. 8. 21. 한국과학기술원이 공공단체로서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등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의 원고적격이 흠결되었다는 취지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9누10649).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당해 사건은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9두53020).
- 청구인은 2019. 3. 22. 위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21헌마686 사건, 2021헌마1557 사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은 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 24. 시행되었는데, 기존에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가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에 ‘(공공단체는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위 제소권자의 범위에서 공공단체가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다.

- 이에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원 임면권자이자 교원소청심사절차의 당사자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과 공공단체인 광주과학기술원은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6.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2019헌바117 사건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 3. 14. 법률 제8890호로 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중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구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2021헌마686 사건, 2021헌마1557 사건

- 2021헌마686 사건의 심판대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4항 중 ‘공공단체’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2021헌마686)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2021헌마1557 사건의 심판대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4항 중 ‘공공단체’ 가운데 ‘광주과학기술원’(2021헌마1557)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하 2021헌마686 사건과 2021헌마1557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신법 조항’이라 한다)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 3. 14. 법률 제

8890호로 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소청심사 결정)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소청심사 결정 등)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한다)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2019헌바117 사건

-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 3. 14. 법률 제 8890호로 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 제3항 중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2021헌마686 사건, 2021헌마1557 사건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구법 조항은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이 ‘교원이나 사립 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아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2019헌바117), 이 사건 신법 조항은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 또는 공공단체인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2021헌마686, 2021헌마1557), 교

원의 인사를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설립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교원의 신분보장을 둘러싼 재판상 권리구제절차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당해 학교의 설립목적과 공공적 성격의 정도, 국가의 감독 수준 등을 두루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교원 근로관계의 법적 성격에 의해서만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
-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설립목적의 특수성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관리·감독 및 재정 지원, 사무의 공공성 내지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 교원의 신분을 국·공립 학교의 교원의 그것과 동등한 정도로 보장하면서 한국과학기술원 교원의 임면권자이자 교원소청심사절차의 당사자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나 공공단체인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두고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구법 조항 또는 이 사건 신법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문형배)

-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을 국·공립학교와 달리 정부가 출연한 법인 형태로 설립한 것은 그 설립목적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상 일정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총장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교원을 임면하고 있고(한국과학기술원법 제16조 제1항,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5조 제1항), 교원의 인사나 복무에 관하여도 내부의 자체 원규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교육부 산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법인 형태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상급행정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렇다면 행정청인 국·공립학교가 상급행정기관에 의한 재결의 효력에 기속되는 구조를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
- 교원지위부존재확인 등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수단은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나 광주과학기술원의 권익을 구제할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보기 어

렵고, 교원과 동등하게 청구인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과 광주과학기술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등 교원의 신분보장에 특별한 장애사유가 생긴다거나 그 권리구제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그럼에도 이 조항은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또는 광주과학기술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06. 2. 23. 2005헌가7등 결정에서 사립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대해 학교법인과 그 소속 교원의 법률관계 및 불리한 처분이 사법적 법률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학교법인이 재심절차(현행 교원소청심사절차)에서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교원과 달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 이 사건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둘러싼 재판상 권리구제절차가 반드시 근로관계의 법적 성격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 학교의 설립목적과 공공적 성격의 정도, 국가의 감독 수준 등을 두루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2005헌가7등 결정에서 사립학교법인에 대해 판단한 것과 달리, 공법인 형태로 국가의 출연으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이나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나 광주과학기술원에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더라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 이에 대해 재판관 3인은 한국과학기술원이나 광주과학기술원이 국·공립학교와 다르게 공법인 형태로 설립된 취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상급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인 국·공립학교가 상급행정기관에 의한 재결의 효력에 기속되는 구조를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점,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수단은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나 광주과학기술원의 권익을 구제할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볼 수 없는 점,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교원의 지위가 특별히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심판대상조항이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나 광주과학기술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보 도 자 료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2019헌바3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제2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부분, 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후보자’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2022. 10. 27.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으로, 창호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조합장에 당선되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음으로써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피의사실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제1심 계속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2호, 제84조의2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9.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제2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부분, 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후보자’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조합의 임원) ④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제8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관련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 감사

 결정주문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제2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부분, 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후보자’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문언해석과 입법목적, 법원의 해석례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는 ‘조합 임원의 선출에 즈음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개별사건에서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동기 및 경위, 행위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시기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적용을 통해 가려질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똑같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

이 결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내 주민들이나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 임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담보되어야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 및 협력업체와 정비사업 조합 임원 후보자 사이에 금품이 오가게 되면 협력업체 선정이나 대금증액 문제 등 정비사업 진행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심판대상조항이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여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합한 조치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공익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정비사업 조합 임원 후보자가 받게 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은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문언해석과 입법목적, 법원의 해석례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이 결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정비사업의 공공적 성격과 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필요성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정비사업 조합 임원 후보자가 받게 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은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보도자료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제외 사건

[2019헌바45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과, 재판관 이미선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이 있다.



2022. 10. 27.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가사사용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19. 기각되자, 항소하면서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하여 퇴직급여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퇴직급여법 제3조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9. 9. 19.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9.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단서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결정주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단서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가사사용인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제공하는 근로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사용자에게 여러 의무를 강제하고 국가가 사용자를 감독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하여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국가의 관리 감

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에게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외에도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영과 관련한 노무관리 비용과 인력의 부담도 발생한다. 그런데 가사사용인 이용 가정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달리 퇴직급여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할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퇴직급여법을 가사사용인의 경우에도 전면 적용한다면 가사사용인 이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최근 가사사용인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 가정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가사사용인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가사근로자로서 퇴직급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가사사용인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가사근로자법과 근로 관계 법령을 적용받을 것인지, 직접 이용자와 고용계약을 맺는 대신 가사근로자법과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 이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가사사용인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급여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 가구 내 고용활동 분야는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인 여성 집중 직종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여성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32조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고용활동 종료 후 임금의 성질을 갖는 퇴직금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공간 또는 시간적으로 ‘가구 내’의 사생활과 무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차별대우가 가정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구 내 고

용활동은 크게 가사관리와 돌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부 퇴직급여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사사용인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바, 퇴직급여제도에서까지 배제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퇴직급여 비용부담을 완화해주는 조치 없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퇴직금제도는 사실상 장식적 제도로 남거나 반대로 여성의 고용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위헌적 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여야 한다.

□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재판관 이미선)**

-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조건을 향상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층은 매우 다양하며 광범위하고,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족, 고령의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경우에 특히 가사서비스 수요가 크다. 그런데 퇴직급여법 적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오롯이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가사사용인의 이용을 위축시켜 각 가정에 돌봄 공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사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국가 등의 재정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가사근로자법의 제정과 같은 단계적 개선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가사사용인을 퇴직급여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다만 가사근로자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가사사용인은 퇴직급여법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근로 관계 법령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현행 근로 관계 법령은 적용범위에서 가사사용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바, 법령별로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가사사용인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결정의 의의

- 가사사용인은 퇴직급여법 제정 당시부터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많은 근로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이 결정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의 적용 배제가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다.
- 참고로 최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으며, 이 법은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보 도 자 료

집합건물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사건

[2020헌바36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집합 건물 공용부분에 발생한 일부 하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 청구권 제척기간을 사용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로 제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고,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2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2022. 10. 27.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산 북구 (주소생략)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는데, 2009. 11. 11.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중 344세대를 2009. 11. 25.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임대의무기간 5년이 만료된 후인 2015. 1. 2.부터 분양전환 방식으로 매각하였다.
-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오시공·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분양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갖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
- 청구인은 2016. 6. 1.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위와 같이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검사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2020. 6. 17.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20.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 115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 및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고,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2항 제2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고,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② 제1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2. 공용부분: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주택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결정주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고,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2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 심사기준

- 집합건물법은 분양자 및 시공자(이하 ‘분양자 등’이라 한다)가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심판대상조항에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청구권 행사기간을 규정함으로써 재산권의 내용 내지 제한을 정하고 있다.
- 이때 권리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할 것인지, 소멸시효로 할 것인지, 행사기간의 기산점과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하자담보청구권에 대한 보호와 집합건물의 하자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안정시킨다는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의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사

항에 속한다. 다만, 행사기간의 기산점을 불합리하게 정하였다거나 행사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그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면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재산권 침해 여부

- 공용부분에 발생한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비교적 경미한 하자과 관련된 하자담보청구권에 대하여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이하 ‘사용검사일 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하의 제척기간을 둔 것은 집합건물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의 증가 및 장기화를 방지하여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위와 같은 권리 행사기간의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통일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려면 하나의 집합건물에 공통되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 공용부분 하자에 개별적으로 제척기간이 진행되도록 하면 분양자 등이 지나치게 장기간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비록 미분양 집합건물, 분양전환된 임대주택 등은 사용검사일 등과 구분소유자에 대한 인도일이 근접하지 않을 수 있으나, 위 경우는 일반적인 선분양과 달리 건물 완성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므로 하자를 확인하고 하자의 보수비용이나 그로 인한 손해를 반영하여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공용부분의 수선·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검사일 등을 공용부분 하자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하자는 표면적이고 소모되기 쉬운 부분에 해당하여 하자가 일찍 발현되고 그 하자를 인식하기도 비교적 용이하므로, 사용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의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라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분양자 등에 대하여 갖는 공용부분 일부 하자담보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사용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로 정한 집합건물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공용부분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하자의 경우 하나의 집합건물에 공통되는 사용검사일 등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지 않는다면 행사기간을 제한하여 집합건물 하자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려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위와 같은 하자의 특성상 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최장 5년의 기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